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12. 1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12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12. 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미래비전추진단 장종연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동
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	인재육성 장학사업	504,046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-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 사항으로 보이며,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검토결과
 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 - 따라서, 미래교육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2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“202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구장학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산의 조성) 및 제16조(재정지원)

다. 사업내용

-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·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

라. 출연 필요성

- 2015년 4월에 구 출연금(5억)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기부 수입으로 기본 재산을 증자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
-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운용소득(이자수익)이 적어 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힘든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- 따라서,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영등포구장학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등포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 위 : 기본재산적립, 인재육성 장학금, 인건비, 운영비
- 출연금액 : 504,046천원

※ 2021년도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21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산의 조성) 및 제16조(재정지원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
제6조(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구의 출연금
 - 2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 - 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

제16조(재정지원)

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